

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62,987,512	19,889,625
일반회계	587,940,468	17,638,214
특별회계	75,047,044	2,251,411
공기업특별회계	33,536,464	1,006,09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3,536,464	1,006,094
기타특별회계	41,510,580	1,245,317
의료보호특별회계	447,491	13,425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271,900	38,157
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802,943	54,088
수질개선특별회계	37,988,246	1,139,64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[채무부담행위사업] "해당없음"

제 4 조 [계속비사업조서] "불임"과 같다.

제 5 조 [이월사업조서] "불임"과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071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